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83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윤영석 · 안철수 · 이상휘
백종헌 · 서천호 · 박성민
박덕흠 · 정동만 · 조경태
김미애 · 이종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 비중이 높아 거주복지 수요는 물론 노인 요양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 편차 및 시설 공급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양로시설은 주거·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시설로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민간이 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존엄한 노후와 돌봄 연속성을 제도

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양로지원)”을“(양로·요양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의 양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의 양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로, “양로지원을”을 “양로·요양지원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요양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 외의 양로·요양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로 · 요양시설 외의 양로 · 요양
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
한다.